

제 736 호
1979.10.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
편 집 :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825 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3
◎ 교 시	
제 44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36
제 44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6
제 44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37
제 44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 결정,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37
제 445 호 :	사회단체등록취소..... 38
◎ 공 고	
제 343 호 :	동정사위치변경공고..... 3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 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176

제 346 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39
제 347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변경자정공고.....	44
제 34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44
제 349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45
제 350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46
제 353 호 :	본수주여단 자문양 (환지) 처분공고... —.....	46

규 칙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전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0월 19일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 제 4항 및 영 제 2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 자

◎서울특별시규칙제 1825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2. 영 제 2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제 13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인사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한다.

제 3조 제 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1.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인사과(지하철본부 소속기능직은 지하철본부 관리과)

다. 공무원교육원, 지하철본부, 세종문화회관, 종합운동장건설본부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 주무과 주무계장

2. 고봉원 및 삼남직원 본청 : 총무과

구출장소 및 사업소 : 인사담당부서

제 11조 제 2항중 '타자로 작성한다'를 '타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 17조 제 1항중 '(구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조중 '특별승진', '승진' 및 '별지제 6 호서식'을 삭제한다

제 12조(전보 또는 전직 금지기간 기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교란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조(응시결석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24 조 제 1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급 위 및 등급	시험 구분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특별 임용 시험
3 급	급	20 세 ~ 45 세	
4 급	급	20 세 ~ 40 세	20 세 ~ 45 세
5 급	급	18 세 ~ 35 세	18 세 ~ 40 세
기능직 7 등급 이상		18 세 ~ 40 세	20 세 ~ 45 세
기능직 8 등급 이하		18 세 ~ 35 세	18 세 ~ 40 세

제 2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 조 (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 24 조 내지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 급이하 공무원 및 6 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서울특별시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 35 조 제 1 항중 제 1 호, 제 2 호

및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항중 '별표 7' 을 '별표 6' 으로 하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6 항중 '특별임용' 을 '특별임용시험' 으로 하고, 제 7 항을 제 9 항으로 하고, 제 7 항 및 제 8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 급 및 3 급갑류는 6 년이상 다만 3 급갑류 의무직은 3 년이상
2. 3 급을류는 3 년이상, 다만 4 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5 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고 선박직렬에 있어서는 5 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7 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의사들 의무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요정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4 급갑류는 2 년이상 다만, 5 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5 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p>4.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4급을유로 할 수 있다.</p> <p>②영제 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별표 4의 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기능직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p>	<p>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7등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자는 6등급으로 할 수 있다.</p> <p>(5)영제 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학교 출신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임용하고자 하는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7의 규정된 과목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 시,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를 편성한 직렬이어야 한다.
<p>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p>	
<p>출 신 학 교 별</p> <p>대학교 4년(대학원) 졸업자</p> <p>전문대학 졸업자</p> <p>실업고등학교 졸업자</p>	<p>임 용 예 정 직 급</p> <p>4급갑류 또는 4급을류</p> <p>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p> <p>4급을류 또는 5급갑류</p> <p>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p> <p>5급을류 또는 기능직 7등급이하</p>
<p>⑦영제 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p>	<p>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p>

출 신 학 교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학교 4년 졸업자	4급감류 또는 4급을류 기능직 6등급 또는 7등급
전문대학 졸업자	4급을류 또는 5급감류 기능직 7등급 또는 8등급
고등학교 졸업자	5급을류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

(8) 영제 1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 진산, 지역사회 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6조 (공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제 17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 구청장 이상의 표상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상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전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상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 2조 제 2항 제 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 제 2항 제 7호 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2년 이상 근무자
 7. 국가공무원법 제 85조 제 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41조의 2 제 1항에 규정한 잡담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자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퇴직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 직을 변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사 5입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7 조 표중 5급 율류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을류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당해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자

제 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5 조 (임용시의 타자능력 점정)

① 영제 8 조의 2 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점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점정을 실시하는 점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 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점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점정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점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점정규정 (총리령) 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점정시험의 실시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점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 기관에서 타자능력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점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제 54 조중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항중 "1년"을

삭제하고 제 4 호 다음에 제 5 호 및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제 27 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회계관계 및 양쪽편리업무등사공무원은 1년) 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보조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청.....실과
2. 구, 출장소.....실, 과, 동
3. 사 업 소.....과 (병원, 보건연구소, 토목시험소, 연료시험소는 제외)

② 의하 단위 보조기관장의 전보인원은 30 % 이상을 동시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10 명 이내의 기관과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감사담당공무원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청총무과 감사담당 공무원
5. 세무공무원
본청 세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청 세무제 1 과, 세무제 2 과 및 제무과 세무수납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제 5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6 조 (전보 사전의결) 영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 위원회에 전보 사전 의결 신청을 할

<p>때에는 별지 제 24 호 서식에 의한다.</p> <p>제 57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장 제 2 절에 둔다.</p> <p>제 57 조 (공무원 교육원 교관임용)</p> <p>①공무원 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별표 17)의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교관은 1인 1분야에 한하여, 모든 교관분야에 1인 이상의 담당교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부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p> <p>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 13 조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p> <p>1. 징계를 받은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계류중인 자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p> <p>2. 심신장애로 교수에 지장이 있는 자</p> <p>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p>	<p>1. 교관 재직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p> <p>2. 심신장애로 교수에 지장이 있는 자</p> <p>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p> <p>제 58 조 제 1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4 급 율류 이하 공무원으로 특수 공로자</p> <p>제 59 조 제 1 항중 "다만 동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을 "다만 승진 시험 시행일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으로 한다.</p> <p>제 6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69 조 (고용원의 정년) ①고용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수위. 제도 및 원예직 : 60 세</p> <p>2. 타자. 전화교환원. 안내원 : 40 세</p> <p>3. 경비 : 50 세</p> <p>4. 간호원 : 55 세</p> <p>5. 사환 : 20 세</p> <p>6. 전각호 이외의 직 : 58 세</p> <p>②고용원으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속하는 경우는 6월 30일에서 7월과 12월사이에 속하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p> <p>③본조의 규정은 잡급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연예시 전</p>
---	--

<p>문 분야위원 등에 대하여는 인력수급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69 조의 3 중 제 2 항을 삭제하고 제 3 항을 제 2 항으로 한다.</p> <p>제 74 조를 삭제한다.</p>	<p>제 80 조 '피평정표 제출결차표' 중 '농촌지도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란 '공무원교육원, 지하철본부'를 '공무원 교육원, 지하철본부, 세종문화회관, 종합운동장'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피 평 정 자</th> </tr> <tr> <td>농촌지도소</td> <td>3 급</td> </tr> <tr> <td></td> <td>4 급 이하</td> </tr> </table>	구 분	피 평 정 자	농촌지도소	3 급		4 급 이하	<p>제 출 결 차</p> <p>지도소 → 농촌진흥청</p> <p>지도소 → 인사과</p>
구 분	피 평 정 자						
농촌지도소	3 급						
	4 급 이하						
<p>제 80 조중 "출장소"를 삭제한다.</p> <p>제 9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90 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 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p> <p>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전자제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이상의 훈련성적에 관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 하위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p>	<p>8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5 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p> <p>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총무처장관나 지정된 과장을 이수한 자에 관하여 평정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은 영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보 공무원의 필사자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90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90 조의 2 (특별훈련성적의 평정)</p> <p>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 90 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p> <p>1.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연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 90 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p> <p>2. 공무원의 제 1 호 이외에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2 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p>						

<p>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과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p> <p>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때에는 이세한다.</p> <p>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p>	<p>하여 평정할 수 없다.</p> <p>③제 90조 및 제 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훈련성적 평정점에 가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일이상 90일이하 - 1.0점 2. 90일초과 180일이하 - 1.5점 3. 180일초과 - 2.0점
<p>제 94조 제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타자, 주산자격증 또는 타자, 주산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급의 4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급류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p>	<p>제 98조 단서중 "그날로"를 "그 다음날로" 한다.</p> <p>제 100조 제 1항중 제 1호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 7호를 삭제하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이 전입(4급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 93조 내지 제 9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p>제 9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p> <p>제 95조 (근무경력의 가점등)</p> <p>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동,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새마을분야 본청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사업과, 구(새마을과)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매 1월마다 0.07점 가점으로 평정하되 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p>②제 1항의 가산점은 3점을 초과</p>	<p>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전출되거나 영제 34조 또는 영제 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및 영제 3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p> <p>제 101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p> <p>①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10일</p>
<p>②제 1항의 가산점은 3점을 초과</p>	<p>①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10일</p>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3조 제 2항중 "출장소 직원의 신상상담소는 출장소 사무과에 두고"와 제 5항을 삭제한다.

제 104조중 "와 출장소 직원" 및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 106조 제 107조 및 제 109조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별표 2) 각종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필요한 학력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석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4의 2)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특전이 부여되는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5)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를 삭제한다.

(별지 6) 특별임용 급류 상당 경력기준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

과 대표표중 화공직렬 해당학과란의 "화공(공업화학, 분석화학)" 다음에 "화학, 물리"를 신설 삽입한다.

조선직렬 해당학과란 "조선" 다음에 "조선공학"을 신설 삽입한다.

공업연구직렬 해당학과란의 "도안" 다음에 "산업공학"을 신설삽입한다. 공립직렬란의 "농림(허당분야)"을 "농림"으로 한다.

농공연구직렬의 해당학과란과 "농공" 다음에 "농공학, 원예학, 수산학, 잔사학, 농성물학, 농가정학"을 신설 삽입한다. 함경도 본란의 직군, 직렬, 해당학과 및 박그란을 삭제한다. 보건직군의 보건연구직렬 해당학과란의 "보건" 다음에 "의학, 치의학"을 신설 삽입한다.

(별표 11)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7) 교과분야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중 제 5란 및 제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주분	피정정자	경정자	확인자
5. 공무원교육원, 세종문화회관, 종합운동장, 지하철본부	종합	4을이하	과장	기관장
6. 농촌지도소		.	기술담당관	소장

(별표 18) 중 제 3 란 및 제 4 란 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별표 18의 2) 중 제 5 란 및 제 6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란을 삭제한다.

기 관 별	구 분		비평정자	평 정 자	확 인 자
	4	3			
5. 공무원교육원, 세종문화회관, 종합운동장, 지하철분부	4	갑	4	과 장	기 관 장
	3	을	3	을	
6. 농촌지도소	4	갑	4	기술담당관	소 장
	3	을	3	소 장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 6 조 서식) 을 삭제한다.
 (별지 제 8 조 서식) 및 (별지 제 9 조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36 조의 2 서식) 중 "인사기록카드요약서"를 "인사기록요약서"로 하고, "3급특응응시상황"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

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분사유

구분	구비서류의종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공개경쟁 특별임용 승진시험	특별임용 시험	전 직 시험	비 고
1	시험요구서 1부			0	0	별지 9호서식
2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1통			0		
3	인사기록요약서 1통				0	별지 37호서식
4	정·현원표 1통			0	0	
5	특별임용사유서 1통			0		
6	전직예정식에 관련있는 직무기술서 1통				0	
7	경력증명서 1통			0		해당자에 한함
8	재직증명서 1통		0			
9	최종학력증명서 1통			0	0	전직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10	주민등록초본 1통	0		0		
11	신원증명서 1통			0		시·구·읍·면장 발행
12	병역증명서 1통	0		0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남자에 한함
13	채용신체검사서 1통	0		0		국공립종합병원 장 발행
14	복무확인서 1통	0		0		원년 군인에 한함
1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0	0	해당자에 한함
16	원호대상자 증명서 1통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0		0		해당자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특별임용 시험	전 식 시험	비 고
	제 2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 해당자와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의호법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17	주산 자격증 또는 능력검정합격증 1 통 (문교부장관과 기타 주산 능력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0		0		해당자에 한함
18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1 통 문교부장관, 노동청장관 기타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에 한함) 그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 장관이 지정한 기관 (별명)	0		0		해당자에 한함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응시자는 본표에 규정된 해당서류는 제 3 차 시험 응시자에 제출한다.

(별표 3)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 시험에 필요한 학력 구분표

직 령	구 분	4 급 이 상	5 급
공업연구	기계 분야	기계공학을 이수한자	공업고등학교
	전기 분야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이상 졸업자
	섬유 분야	섬유공학을 이수한자	
	화학 분야	화학공학, 응용공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야금 분야	금속공학 또는 야금학을 이수한자	
	공업경영 분야	공업경영학을 이수한자	
	환경 분야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공학, 화산농화학, 식품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천문기상학, 생물학, 토목공학 또는 도시계획을 이수한자	
농촌지도	농업제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농업제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농업연구	농업 분야	농업제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농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농업제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농업경영 분야	농업경영학 또는 농업경제학을 이수한자	
	임업 분야	임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잠업 분야	잠사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축산 분야	축산학 또는 동물학을 이수한자	
	가축위생 분야	축산학, 동물학 또는 수의학을 이수한자	
	농공 분야	농업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또는 토목공학을 이수한자	
광업연구	기계 분야	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학 령	구 분	4 급 이 상	5 급
	전기 분야 화공 분야 채광 분야 지질 분야 야금 분야 선광 분야 물리 분야 토목 분야	전기공학, 전자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화학공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채광학 또는 지질학을 이수한자 지질학을 이수한자 야금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지질학, 야금학 또는 채광학을 이수한자 물리학을 이수한자 토목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자	
보건연구	의학 분야 공중 보건 분야 약학 분야	의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자 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 품학,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방사선학 임상병리학 또는 위생공학을 이수한자 약학, 생물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자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수 산	수 산 분야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수산 또는 해 양 계통의 고 등학교 이상 졸업자
토 목	도시 계획 분 야	토목, 건축, 도시공학(도시계획포함) 또는 지리학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이수자	토목, 건축, 지 적 또는 지리와 관련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 고

1. 윗표중 3급이상의 응시학력은 4년대학 및 교육법에 의한 4년대학
 계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제3학년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제3
 학년의 제1학기까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3학년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2. 윗표중 4급의 응시학력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
 교졸업자 및 동 졸업예정자(최종학년의 제1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고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자를 포함한다) 4년제 대학 제2학년 수료자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3. 위의 1및2의 학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별표 4)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진직시험의 응시자격요한자적구분표

구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사 서	정 사 서	정사서 또는준사서	정사서 또는준사서
수 의	수 의 사	수 의 사	수 의 사
의 (일반의무분야)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또는 한의사
의무(치의분야)	치 과 의 사	치 과 의 사	치 과 의 사
약 무	약 사	약 사	약 사
간 호	간 호 원	간 호 원	간 호 원
선 박 (선박분야중해)	갑종선장, 어선갑종 선장, 갑종 1 등 및 2 등항해사, 어선갑종 1 등 및 2 등항해사	을종선장, 어선을종 선장, 을종 1 등항해사, 어선을종 1 등항해사	을남 2 등항해사, 을남 2 등항해사, 소항해사, 방항해사
선 박 (선박분야중기관)	갑종기관장, 갑종 1 등 및 2 등기관사, 갑종선박 통신사	을남기관장, 을남 1 등기관사, 을남선박 통신사	을남 2 등기관사, 방기관사, 스팀선박 기관사, 방선박통신사
지 직	지적기사 1 급 (지적측량사)	지적기사 2 급 (지적측량사)	지적기사 3 급, 지적기사 1 급 및 2 급 (지적측량사)

비고 : 위 표중 () 속에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의 명칭임.

		(별표 4의 2)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특전이 부여되는 자격종 구분표		
		3 급 이 상	4 급	5 급
기계	기계분야	기계기술사(건설기계)(건설기술자) 갑류(기계)	건설기계사 1급(건설기술자) 을류(기계)	건설기계사 2급(건설기술자) 병류(기계)
	자동차 분야		일반관리기능사 1급 일반기계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1급 자동차정비기사(1급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1급(2급 자동차정비사)	일반관리기능사 2급 일반기계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급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2급(3급 자동차정비사)
	전기분야		자동차점검기사 1급	자동차검사기사 2급
	기계분야		제강기사 1급 (1급제강사) 제강기사 2급 (2급제강사)	제강기능사 2급 (3급제강사)
전기	전기분야	전기기사 1급(전기주임기술사 1급) 전기공사기사 1급(전기기술자 갑류)	전기기사 2급(전기주임 기술자 2급) 전기공사기사 2급(전기기술자 을류) 전기공사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전기기사 2급(전기주임 기술자 3급) 전기공사기사 2급(전기기술자 병류) 전기공사기능사 1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급
방사선	방사선위생관리기사	방사선위생관리기사	방사선위생관리기사	
분류	방사선응급의료원소위 급자(특수또는일)	방사선응급의료원소위 급자(특수 또는일)	방사선응급의료원소위 급자(특수 또는일)	

직렬	구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섬유분야	섬유기술자 (기술 사섬유부분)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사 1 급 (품질관리사)
	화공분야	화공기술 또는 산업 응용기술사 (요업) (기술사 (화학부 분))	품질관리기사 1 급 소방시설기사 (화공 분야) 1 급 화약품질관리기사 1 급 위험물 취급기능장 화공기사 1 급	소방시설기사 (화공 분야) 2 급 화약품질관리기사 2 급 위험물 취급기능사 2 급 화공기사 2 급
	조선분야	조선기술사 (조선 설계, 선체, 기관 접사)	조선기사 1 급 박용기계기사 1 급 조선제도기능사 1 급	조선기사 2 급 조선제도기능사 2 급
	금속분야	금속기술사 (기술 사 (금속부분))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기사) 금속기사 1 급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사) 금속기사 2 급
	광업	광업기술사 (채광)	광산보안기사 1 급 광산기사 1 급	광산기사 2 급 광산보안기능사 2 급 광산기계설치기능사 2 급
농 립	농업분야	산업응용기술사 (농예화학, 식품 제조가공) (기술사 (농업부 문 : 작물식물방역)) (기술사 (농업부 문 : 농화학))	농예화학기사 1 급 원예종묘기사 1 급	농예화학기사 2 급 원예종묘기사 2 급 농약기능사 2 급
	잠업분야	섬유기술사 { 생사 (기 술사 : 농업부분 잠사) }	섬유기술사 (생사 { 기 술사 : 농업부분 잠사 })	
	임업분야	산업응용기술사 (임산 가공) (임업부분 (임 산))	임산가공기사 1 급	임산가공기사 2 급

직렬		구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산업응용기술사(중요)	임업증표기사1급	임업증표기사2급 임산가공기술사2급 임업증표기능사2급
축 산	축산분야		기술사 (농업부분 : 축산)	기술사 (농업부분 : 축산)	가축인양수장사
농 지	농업분야		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 업	농업분야		기술사 (농업부분 : 농화학)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기술사 (농업부분 : 식품가공) 기술사 (농업부분 : 작물) 기술사 (농업부분 : 식물방역)	기술사 (농업부분 : 농화학)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기술사 (농업부분 : 식품가공) 기술사 (농업부분 : 작물) 기술사 (농업부분 : 식물방역)	
농 업	관업분야		섬유기술사(생사(기술사 : 농업부분 : 잠사))	섬유기술사(생사(기술사 : 농업부분 : 잠사))	
농 촌	축산분야		기술사 (농업부분 : 축산)	기술사 (농업부분 : 축산)	가축인양수장사
농 업	가축위생분야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보 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직 령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보 전 구 연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시험사,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또는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시험사,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또는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시험사,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또는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공해분야	공해관리기술사 공해관리기사 1급	공해관리기사 2급	공해관리기사 2급
	의학분야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공중보건 분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간호원, 공해 관리기술사, 식품제 조가공기술사, 공해 관리기사 1급, 식품 제조가공기사 1급,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동위원소취급 자(특수 또는 일반)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사, 위생시 험사, 간호원, 공해 관리기사 2급, 식품 제조가공기사 2급,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또는 일반)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간호 원, 간호보조원, 공 해관리기사 2급, 식 품제조가공기사 2급 방사선취급감독자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또는 일반) 를 추가한다.
	약학박사	약사	약사	약사
	수 산	산업응용기술사 (수산제조)	수산제조기사 1급	수산제조기사 2급
	토 목 분 야	토목기술사(시공) (건설기술자감류 (토목))	토목기사 1급 (건설기술자감류 (토목))	토목기사 2급 (건설기술자감류 (토목))

직렬		구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특정기사 1급 (1급추량기사)	특정기사 2급 (2급추량기사) 특별재도기능사 1급 추량기능사 1급	특정기사 2급 (2급추량기사) 특별재도기능사 2급 추량기능사 2급
		도시계획 분 야	국토개발기술사 (지역또는도시계획) 토지평가사	도시계획기사 1급 가격기사 1급	도시계획기사 2급 지역기사 2급
		수도입부 분 야		계량기사 1급 계량기사 2급 (2급계량기사)	계량기능사 2급 (3급계량기사)
전	추	건축사 (1급건축사) 건축기술사 (건축사 종) (건설기술사장 류 (건축)) (건설 기술자율류 (건축))	건축사 (2급건축사) 건축기능기사 1급 (건설기술자율류 (건축)) 건축사도 기사 1급	건축사 (2급건축 사) 건축기능기사 2급 (건설기능사별 류 (건축)) 건축 사도기능사 2급	
측	지	측지기사 1급 (1급추량기사)	측지기사 2급 (2급추량기사)	측지기사 2급 (2급추량기사)	
통신사	유선통신 분 야		인쇄통신기능사 2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유선통신선로기능장	인쇄통신기능사 2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유선통신선로기능사 1급	
	무선통신 분 야	전파통신기사 1급 (제 1급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사 2급 (제 2급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능사 2급 (제 3급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통신기술	통신기계 분 야	유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 (1급또는 2급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사 2급 (2급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능사 1급	유선설비기능사 2급 (3급유선기술사)	
	통신선로 분 야				

직 렬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전 종 기 술	반 종 기 술	분 야			
	무 선 기 술	분 야	무선설비기사 1 급 또 는 2 급 (제 1 급 무 선 기 술 사 또 는 제 2 급 무 선 기 술 사)	무선설비기사 2 급 (제 2 급 무 선 기 술 사)	무선설비기능사 2 급 (제 3 급 무 선 기 술 사) 제 1, 2, 3 급 아 마 추 어 무 선 기 사 특 수 급 무 선 기 사
비 고 : 윗 표 상 () 속 의 자 격 증 명 청 율 국 가 기 술 자 격 법 시 행 이 전 의 다 른 법 령 에 의 한 자 격 증 명 청 임 .					

(별표 6) 특별임용급류상당경력기준

임용예정 급류 직무분야	2급갑류	2급을류	3급갑류	3급을류	4급갑류 기능직 6 등급이상	4급을류 기능직 7	5급갑류 기능직 8	5급을류 기능직 9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사	경장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성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령	지방소방령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장	소방령	소방령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준장	대령	중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하사
교육대학 공무원 (초급대학 (사립 전문학교보 학 포함)	교수 (3년이 상)				전임강사			
교원 (초, 중, 고 포함) 등학교 및 기 타 교육공무 원			9 호봉	16 호	20 호	24 호	29 호	30 호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하
			(6 호봉 이상)	(9 호봉 이상)	(11 호 봉 이상)	(11 호 봉 이상)	(15 호 봉 이상)	
관사 · 검사	4 호봉 이 상	6 호봉 이 상	9 호봉 이 상					

46-26

제 736 호

시

보

1979.10.19

임용예정 직무분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급	16급 17급 18급	19급 20급 21급	22급 23급 24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급 16급	17급 18급 19급	20급 21급 22급	23급 24급 25급
기능직 고등원								
정부 부 자 기 관	이 사 이 사 부 장 과 장 계 장 평 사 원 평 사 원 평 사 원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11년 이 상)	관 련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8년 이 상)	관 련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5년 이 상)	관 련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5년 이 상)					

- 비고 : 1. 윗표에 기재된 당해 급류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영제 17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교육공무원중 팔호안에 표시된 호봉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 4 조제 3 항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요경력년
 수에 달한 때에는 특별임용할 수 있다.

(별표 11)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에 당 급류표

해당 급류 구분	4 급갑류기능직 6 등급이상	4 급을류기능직 7 등급	5 급갑류기능직 8 등급	5 급을류기능직 9 등급이하
4 급 및 5 급 별 정 직	4 급갑류상당	4 급을류상당	5 급갑류상당	5 급을류상당
경찰공무원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경·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 인	중 위	소위·준위	상사·중사	하 사
군 속	4 급갑류	4 급을류	5 급갑류	5 급을류
교육공무원	대학전임강사· 13 호봉 이상 의 장학사 중학교교감·13 호봉이상의 중 등학교교사·국 민학교교장	대학조교· 14 호봉 이하의 장학사, 14 호봉 이하 22 호봉이 상의 중등학교 교사·국민학교 교감·13 호봉이 상의 국민학교교사	23 호봉이하의 중등학교 교사 14 호봉이하 22 호봉이상의 국민 학교교사.	23 호봉이하의 국민학교교사

(별표 17) 교 과 분 야

1. 기획 및 일반재정분야
2. 세무행정분야
3. 행정법규 및 송무분야
4. 지역개발분야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시정비, 재개발등)
5. 행정관리분야 (민원업무, 행정응답, 문서, 통제등)
6. 정신개발분야
7. 토목기술분야
8. 건축기술분야
9. 농림수산분야
10. 상공행정분야
11. 보건행정분야
12. 민방위분야

응 시 위 서 (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하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
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불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조치도 감
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② 근 직											
③ 주 소		(통 반)									
④ 최종출신학교		19 년 월 일		학교 (과 년)		출업·출업예정 수로·재 학					
		19 년 월 일		학교 (과 년)		출업					
⑤ 경 력		19 년 월		일부터						종 사	
		19 년 월		일까지							
⑥ 선 택 과 목	1	2	3	⑦ 가 산 기 표 란	기 능 시 행 기 관	주 산	급	타 자	급	⑧ 원 호 () 대상자	⑩ 비 고
									⑨ 제대(현역)군인복무기간		
⑪ 응시 급류	급 을류			⑬ 성 명	(한글)				⑮ 성 별	남 여	⑰ 사 진 반명합판 (3.5cm×4.5cm)
⑫ 응시 직렬	(분야)				(한자)						
응시 ※ 번호	부 호				⑭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생 (세)					
					⑮ 주민등록번호						

219)

계 인					
⑬ 응시 규류	급 율류		응 시 권 서 (부분)		⑮ 사 질 반명합판 (3.5cm×4.5cm)
19 응시 직별	(분야)		20 제 회 시험	24 성 남	
응시 번호	부 호		20 성 명 (한글)	24 성 별 여	
			(한자)		
			29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세)		
			23 주민등록번호		

제 736 호

시

계 인					
27 응시 규류	급 율류		응 시 표		⑯ 사 질 반명합판 (3.5cm×4.5cm)
28 응시 직별	(분야)		29 제 회 시험	30 성 남	
응시 번호	부 호		30 성 명 (한글)	30 성 별 여	
			(한자)		
			30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세)		
			19 년 월 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보

1979.10.19

46-29

1203-61-2 A(1)
1978.12.14

190mm×268mm (인쇄용지 (등급) 120g/㎡)

응시원서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② ③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④ ⑤ ⑥ ……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되 ④ ⑤ ⑥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것.
 3. 본적 및 주소 ⑦ ⑧ ……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곳 (번지, 동, 반명기) 을 기재할것.
 4. 최종출신학교 ⑨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수학기분중 해당하는 것에 ○표 할것.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대학을 ※란에 기재할것.
 5. 경 력 ⑩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 (군 경력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 명 및 직급을 명기할것.
 6. 선택과목 ⑪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개 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지에 따를것.
 7. 비 고 ⑫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시험회수, 시험명 및 응시번호나 합격증서 번호를 기재할것.
전혀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합격자가 차회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전회행정, 외무 및 기술고등고시 제1차 시험합격자가 차회 당해 고등고시의 제2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8. 가산기표란 ⑬ ⑭ ⑮ …… 4 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원호대상자의 해당표지 (◎ 또는 ○표)를 할것.

※ ◎표지 대상자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이나 천물군경의 유족중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표지 대상자
- (1) 군인사법 제7조 또는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병인경우 육군과 해병대는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전투경찰계대자 포함)
 - (2)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최종시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인자.

수 입 증 지 점 부 란

- 9. 응시 급유 ①②③④⑤... 응시하는 급유를 기재할것.
- 10. 응시 직렬 ②③④⑤...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당해 직렬중 분야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분야까지 명기할것.
- 11.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은 기재하지 않것.
- 12. 생년월일 ③④⑤⑥...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귀종시험(면접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연령을 기재할것.
- 13. 주민등록번호 ④⑤⑥⑦...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것.
- 14. 성 별 ⑥⑦... 해당하는 성별에 ○표할것.
- 15. 사진란 ⑦⑧⑨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X4.5cm) 남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붙로 첨부할것.
- 16. 우무인 ⑪...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말것.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및번호) 및 사진위의 결함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접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지참 재교부만아야 한다.
-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남인 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원기구만을 지참하여야 한다.
- 4. 시험당일은 매시정각 40분전까지 기실외 좌석에 착석하여 복합된 기실내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남인 지참하고 시험을 받아야 한다.
- 5. 남인작성은 남인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6. 시험실내에서의 휴연, 담화, 활활의대여등은 일절금지하며 일단 입실한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입의 퇴장할 수 없다.
-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기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 자격을 감지 처분한다.
-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91

(별지 제 9 호 서식)

시 험 요 구 서

46-32

제 736 호

시

포

1979.10.19

※	기 관	계 인						
접수번호								
① 기 관 명	소 속		② 시 험 구 분		③ 임 용 예 정 직 급	직 명 분 야	급 류	급 류
④ 성 명	요 구 한 글		⑤ 연 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 등 분 야	급 류	급 류
	한 자							
⑦ 선 택 과 목	가. 나.		⑧ 필 기 시 험 면 제 사 유		⑨ 제 1 차 시 험 면 제 사 유	19 년 월 시행 제 회 1 차 합격 응시 번호		
⑩ 자 격, 면 허 훈 련 등			⑪ 원 호 대 상 여 부 (해 당 란 에 ○)	군 계 대 자 (만 기) 군 사 원 호 대 상 자	※ 대 장 원 본 확 인	대 장 번 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19 년 월 일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인)
장

제 인

(사 진)

(3.5cm X 4.5cm)

※	시행차수	1	2	3
	시행년월일	19	19	19
시행상황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시번호			
	전 과			

제 736 호

시

부

1979.10.19

46-33

응시 번호

공 시 료

19 년시행 제 회 시험

입 용 에 정 직 명 : (급 류)

신 명 :

시 임 요 구 기 관 명 :

19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
하는 것과 동일한
원본, 동일한 가격

2192

1203 - 1 - 1 A
1978.10.13 8인

190 mm X 268 mm 인 화 용 기 (특 급) 120 g / m²

작 성 요 령

1. ※간과 응시포상의 작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1)-(11) 란은 시험요구 기관의 인사사무 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요령에 의한다.
 - (1)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 기관의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일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2)란은 "특별승진" "전직"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3)란의 "분야"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렬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4)란은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 (6)란은 (3)란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7)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1 과목 또는 2 과목(서기관 이상 전직, 특채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 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8)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서류심사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9)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차 시험 면제해당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 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년월, 시험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0)란과 (11)란은 4, 5급 특별임용시점 공시사제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중
가점수가 가장 많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들 증명절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원당자의 계급을 나타내어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정 령 제 111 호 부 칙 제 1 호)

공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료는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도록 한다.
2. 지원자격은 응시료 및 첨부란, 또는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사진을 동시에 제출 또는 신분증과 재교부권(부정판 또는 봉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장서는 액자크기(가로 30cm 이하)로 작성된 직사각형 장정판의 양쪽의 여백은 가로 1cm 및 세로 5mm 이상을 유지하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41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30 호(79.10.6)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 하 있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9.10.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성북구중암동 3-1342 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종암 제 1 시장
3. 사업규모: 3,305.8 (1,000 평)
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북정동 1-2호 청한주택(주) 대표이사 김종중
5. 사업의착수 및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80.4.29
6. 위치및계획평면도: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별첨(도면생략)
 -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44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5 호(77.11.29) 및 농고시 제 64 호(78.2.27) 호로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 사업(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시강서구신월동 경인지구 80-1구획(산 33-5, -24, -25, 산 63-1, 산 34-1, 산 59-1, -4, -5, -6, -7, 도로) 일반지(산 59-1, 산 64-4, 산 63-1)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신월동 국민학교
3. 면적및규모: 17,719 ㎡ (5,360 평)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1979
나. 준공예정일: 착수년월일로부터 1년
-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별첨 (도면생략)
- 7. 공사설계도면: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3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979.10.16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을

서울특별시 장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경	서울교육대학	강남구서초동산 114-1 일대	84,622 (25,593평)	
변 경	"	"	110,004 (33,881평)	8,283 평 (2,528평) 추가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 1. 건설부 고시 제 349 호 (79.9.21)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지적승인과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에 대한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18

서울특별시 장

가.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복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6	35 m	4730m	제 1 한강교	구영동포구청	노량진·수원지부
변경	"	"	"	35-45	"	"	"	근 390m 확장
기정	"	2	44	30	1600	봉천동(광19)	신림동(서울대)	서울대구내
비정	"	"	"	"	1080	"	봉천동산 8	520 m 폐지
실수	중도	1		20	200	본동 256	본동 180 (대 1-6)	

나. 학교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서울대학교	관악구 봉천동산 12 일대	3,782,023 m ²	대 2-44 페이지간
변경	"	"	3,797,623 m ²	편입증 15,600 m ²

다. 수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수도	관악구 본동 158 일대	111,341.90 m ²	
변경	"	"	110,491 m ²	감 850.90 m ²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5 호

사회단체등록취소

다음 사회 단체는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의하여 단체
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에 고시한
다.

1979.10.

서울특별시 장

c 등록취소 단체 내용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77 호	77.10.17	새생활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자부	최대석	서울시마포구 공덕동427-5	79.10.18	사회단체본부 자진허산

공 고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한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343 호

동청사위치변경공고

1979. 10

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결 상 전

o 위치변경 내용

동명	변경내용		변경일자
	이전	후	
양저동	강남구양재동 42-1	강남구양재동 321-1	79.10.20

◎ 서울특별시공고제 346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1979.9.27

다음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주택

서울특별시장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2	김상열	남양설비주	중구수표동 47-6	78.3.22
4	홍정운	금강주택개발주	중구율지로 2가 19-2	78.3.24
5	송지건	한국주택개발주	중구예관동 29-4	78.3.24
17	박재덕	서통개발주	중구철동 2가 92-3	78.4.22
31	김복열	신흥상가주택공사주	영등포구신길동 255-9	"
35	신선호	울산중공업주	중구서소문동 85-3	"
50	박대규	주대전	용산구갈월동 93-30	"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54	이광훈	서진기업(주)	종로구 인사동 235	78. 4.28
58	장성채	판악사업(주)	판악구 사당동 135-1	"
59	나재선	(주)동화	용산구 갈월동 98-39	"
61	백유식	삼산공업(주)	중구 삼각동 113	"
63	최상일	뉴서울주택개발사	강서구 화곡동 13-3	"
64	조경재	(주)명화전업사	중구 홍인동 119	"
66	이충성	서린개발(주)	종로구 청진동 201-1	"
69	최남섭	한국건설(주)	중구 남대문로 5가 1-1	"
70	김덕순	경일기업(주)	중구 장충동 1가 62-35	"
73	이서구	대림동산(주)	중구 산림동 166	"
77	최상규	(주)태보주택	용산구 이태원동 56-13	"
75	김인환	금강동영(주)	동대문구 청량리동 781	"
79	신준식	반도전영(주)	중구 중림동 420	"
80	하승남	윤심개발(주)	강남구 청담동 338-1	"
82	유영구	명지건설(주)	중구 서소문동 58-17	"
86	한원석	제일약품(주)	강남구 서초동 84-1	"
95	임병호	심화전업	성동구 자양동 219-2	"
102	성백준	화일산업(주)	중구 장교동 26	78. 4.29
107	김홍중	중원건설사	성동구 중곡동 106-31	"
112	한광근	농양기계공업(주)	영등포구 양평동 2가 1-1	"
114	우기성	진우개발(주)	강남구 삼성동 157-59	"
115	김만성	연한건축공사	중구 충무로 5가 20-40	"
120	강창경	(주)동우주택	영등포구 신도림동 909-2	"
123	천신일	동해산업(주)	용산구 한강로 1가 285-1	"
124	문윤환	대보건설(주)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42	"
128	강충모	(주)광명주택	종로구 신문로 1가 220	"
131	구자실	농오건설(주)	중구 신당동 247-33	"
137	김지완	전원주택건설(주)	종로구 당주동 167-1	"
144	황석주	(주)황공무사	마포구 창전동 13-27	"
145	박동현	연일주택	중구 회현동 2가 18-2	"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고부일자
147	김유영	봉진설비(주)	종로구 돈의동 114-1	78.5.2
148	박경복	조선맥주(주)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78.4.29
149	박일환	한전주택	영등포구 여의도동 1-567	"
159	김종대	백송(주)	서대문구 북아현동 48	"
160	박화명	삼풍주택(주)	관악구 동작동 307	"
165	김순식	금문개발(주)	용산구 이촌동 301-61	"
172	김대정	도진건설(주)	중구 다동 131	"
174	김상준	역화공영(주)	용산구 갈현동 71-12	"
180	장창희	(주)창신주택	관악구 신림동 43-6	"
181	장도영	(주)정영주택	중구 관무로 1가 24-20	"
183	이경두	덕부주택산업(주)	중구 광학동 1가 240-2	"
187	정치일	(주)부흥개발	용산구 한강로 2가 2-37	"
194	박희주	대일건설(주)	종로구 낙원동 284-6	"
196	이규하	하영실업(주)	중구 장충동 2가 136	"
198	최희춘	우신건설(주)	종로구 광학동 38	"
201	정상환	동아공간개발(주)	중구 예관동 70-27	78.5.4
204	박응준	연희개발(주)	관악구 신림동 539-26	"
205	서정학	승화공업(주)	서대문구 미군동 320	"
212	빙웅길	(주)일신건설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28-23	"
215	손영준	근화개발(주)	용산구 청파동 3가 30-10	"
225	이능환	(주)동천전업	중구 정동 23-8	"
226	이한영	안산주택진흥공사	종로구 종로 3가 130	"
228	이수홍	동양 FRP 공업(주)	강서구 신성동 619	"
229	한서규	유신실업(주)	서대문구 남가좌동 324-19	"
232	박재익	동부건설(주)	중구 인현동 2가 192-30	"
233	배운석	대림개발(주)	관악구 동작동 13-1	"
237	이병두	범화건설(주)	중구 압정동 189-1	"
242	이양구	동양종합산업(주)	강남구 청담동 산 24	"
245	서해창	(주)성창전업	종로구 관수동 6	"
253	신양우	농성건설(주)	종로구 관철동 25	"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257	김기삼	우남건설(주)	충구 다동 188	78.5.4
263	김현우	유일건설(주)	용산구 한남동 76-20	"
264	윤문수	동일주택	관악구 봉천동 31	"
265	김진일	부림주택(주)	관악구 봉천동 419-2	"
271	원종근	동영건설사	마포구 합정동 382-10	"
272	이현만	전원주택개발(주)	동대문구 남십리동 267-8	"
276	홍우택	남진공영(주)	충구 초동 18-10	"
278	이원상	법진건설(주)	충구 을지로 3가 206-11	"
279	송완선	진우공업(주)	충구 명동 2가 33-1	"
282	윤태형	은하산업	강남구 서초동 151-2	"
286	이서행	한형건설산업사	도봉구 미아동 160-37	"
288	윤창덕	성일화학공업(주)	영등포구 가리봉동 250-18	"
289	황인수	성일건설(주)	충구 을지로 4가 310-68	"
294	최진영	한국종합산업(주)	성동구 증동 278-1	"
295	이부진	전우개발(주)	충구 증립동 355	"
299	이명원	대영주택공사	서대문구 응암동 103-2	"
300	오윤성	성전사	성동구 도선동 363	"
301	김용성	금성개발(주)	강남구 신사동 467-10	78.5.10
302	이한구	시범건설(주)	강남구 서초동 84-4	"
304	이재원	(주)창원종합개발	충구 을지로 5가 20-1	"
305	김희석	(합)명도건설사	충구 을지로 2가 148-4	"
306	이인범	삼흥토건(주)	충구 봉래동 1가 82	"
309	김희수	광산기업(주)	마포구 용강동 122-1	"
310	김규환	일한산업(주)	충구 회현동 1가 10-2	"
313	최승운	영풍진흥기업(주)	용산구 원효로 2가 14	"
314	오병태	정림주택개발(주)	종로구 연건동 187-1	"
316	허완구	부천주택	충구 남대문 4가 17-2	"
318	현종락	(주)한양건축	도봉구 수유동 191-67	"
319	김도연	대한종합개발(주)	충구 서소문 58-7	"
324	신훈호	농심개발(주)	영등포구 신길동 4564	"

등록번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326	김충인	(주)부일주택	용산구 한강로 2가 140	78.5.10
327	김철	전엔지리어링	중구 로동 155-3	"
328	박정호	우방건설(주)	용산구 농부이촌동 300-322	"
329	양오현	(주)삼정주택	강남구 가포산 1-6	"
330	최병길	청조주택개발공사	중구 다동 71	"
333	김만중	삼도종합개발(주)	영등포구 여의도 1-700	"
334	한홍경	한경주택	성북구 삼선 5가 275-1	"
340	최삼규	이화공영(주)	중구 필동 2가 17-2	"
342	경주현	중앙개발(주)	중구 을지로 1가 50	"
345	김동기	중앙상선(주)	송로구 충학동 14	"
348	김형주	(주)삼안건설기술공사	송로구 신문로 1가 171-6	"
351	김정국	삼안공영(주)	송로구 보동 121	"
352	이현우	삼원진흥건설(주)	송로구 관철동 10-10	"
353	김연수	홍익공영(주)	강남구 삼성동 157-60	"
358	유기학	국계공영(주)	중구 을지로 1가 37	"
360	신동범	한양토건(주)	송로구 창신동 424-2	"
361	노영식	점익산업(주)	강남구 학동 159-1	"
362	이철영		성동구 화양동 24-7	"
365	김배격		관악구 대방동 407-31	"
366	이원행	성원개발	영등포구 개동동 353-1	"
366	원혁열	(주)한림화학	영등포구 구로동 685-151	"
371	조인상	미영통상(주)	영등포구 독산동 125-1	"
372	박경근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강서구 등촌동 산 61-1	"
377	남부용	우리건설(주)	중구 양동 314	"
380	곽기석	(주)농진건설	강남구 정남산 67-68	"
383	홍경석	옥전산업(주)	중구 을지로 4가 315	78.5.16
387	황의영	동명주택	관악구 신림 704-61	"
391	장정환	유정산업(주)	강서구 옥동 81	78.5.24
392	민병욱	남원산업(주)	영등포구 지동동 510-5	"
397	박호근	(주)거북이개발	강남구 도곡동 129-6	"

연호	성명	상호	소재지	교부일자
403	이인호	삼성개발	동대문구 신설동 102-4	78.5.24
405	김진화	태하전업	중구 수화동 16	78.5.30
406	김정일	삼동건설(주)	서대문구 미군동 194	"
409	허상우	보원주택	중구 수하동 5	"
414	최명준	동한산업(주)	중구 장교동 42	"
415	김창권		종로구 부암동 177-6	"
422	장갑익외 5	한일건설공영	용산구 동자동 14의 51	"
423	조승덕	대우산업(주)	중구 덕천동 2가 192-30	"
429	김영희	신석전파로건설	종로구 종로 2가 5	"
계			136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7 호

영등포구 구회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에
관한 공고

영등포구 구회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에 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1 호 (79.6.2) 에 관한 공고절차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계획 일부 변경 사항에 관한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계획안을 일부 변경지정 하기로 이를 공고한다.

관계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0. 19.

서울특별시

(환지예정지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등포구 구회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 반포동 227, 226번지
- 다. 변경면적 : 1,392.80평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8 호

공인실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실 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실조사용 승인을 하기로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9. 10.

서울특별시

- 1. 공인명 가) 서울특별시립 강동구 보건소장의인
- 나) 서울특별시립 강동구 보건소계인


제 736 호 시

보 1979. 10. 20 45-46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
전소 장수관리의인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
전소 분임경리관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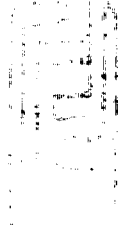
마)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전소 분임장수관의인
2. 일시개시일 1979. 10. 20
3. 공인외의인영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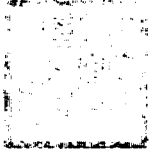
공인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장수관의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분임관의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장수관의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전소분임관의인

◎서울특별시 공고제 34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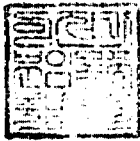
1979. 10. 20

공인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의 같이
선조사용 승인 하였기에 서울특별시 공
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 공인명 : 의전과 분임봉을
출납원헌
2. 사용개시일 : 1979. 10. 20

3. 공인의 인영	관계인에게 보인다.
<p>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영</p>	<p style="text-align: right;">1979.10.1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환지에 정지변경내역)</p> <p>가. 사업명 :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위치 : 강남구민포동618번지외22필 강남구서초동1086의1호 다. 변경면적 : 7,587.40 평</p>
공인명 : 의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353 호
<p>◎ 서울특별시공고제 350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p> <p>1.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0 호 (79.8.16)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 계획을 일부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환지 예정지를 일부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p>	<p>은수주택단지분양 (환지) 처분공고</p> <p>1. 서울특별시공고 제 254 (76.10.2) 호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실시계획인가된 은수주택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하고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2 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9.10.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